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44
----------	------

2019년 12월 17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0월 10일, 노승재 의원

2.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3. 상정일자

○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

(2019년 12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노승재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봉사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운영 계획」을 서울시교육감 지침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 관한 근거규정을 서울시교육청조례로 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학생 봉사활동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립학교에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립학교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나. 위원회가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 라. 회의의 소집 및 개최, 의결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9조).
- 마. 교육감은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10월 10일 노승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044호로 발의되어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봉사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난 2018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는 11개 정부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원봉사 문화 참여, 자원봉사 인프라,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자원봉사 국제교류·협력 등 5대 정책영역을 포함한 “자원봉사 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18~’22)”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학생 진로 맞춤형 봉사, 지역사회 연계 봉사 등 다양한 활동 모델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학생 중심 봉사활동 운영과 실적관리를 통한 학생들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학생 선택 중심의 맞춤형 봉사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도 단위학교 중심의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운영 계획(민주시민교육과, 2019.2.)”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특히, 단위학교에서 운영되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 봉사활동 인정 기관 지정 및 인정 기준시간 조정,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 인정 여부, 지역과 연계한 봉사활동 운영 등 봉사활동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봉사활동 지침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 구성 인원을 학교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위원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기준을 학교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¹⁾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은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운영에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봉사활동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구성체계

- 동 조례안은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등 총칙 규정을,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명칭, 기능,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자원봉사 교육, 협력체계 구축,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안 제5조는 위원회가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학생봉사활동 계획의 수립, 지원 및 평가, 학생의 교육 및 교사의 연수, 유관 기관과의 협력,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 인정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호의 “학교 학생봉사활동 계획”과 제5호의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 여부”는 학생 봉사활동의 실적 인정, 실적의 학생 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봉사활동의 중요한 사항을

1)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운영 계획(민주시민교육과, 2019.2.)]
 - 교감(위원장), 봉사활동 업무담당 부장(부위원장), 위원(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두며 인원은 학교 실정에 따름.
 - 학교 실정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에 봉사활동 업무 담당교사, 봉사활동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 인사 등을 참여시켜 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봉사활동의 세부적인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표1] 봉사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학교급		학생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비고
초	1~3	5시간 이상	
	4~6	10시간 이상	
중		15시간 이상	입시총점(300점)의 4%, 학년당 4점 배정
고		20시간 이상	

○ 이 밖에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 면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교육청도 동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407, 2019.11.18.).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Ⅶ.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학생 봉사활동 추진을 통해 학생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체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중 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
2. “학생봉사활동”이란 학생이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공립 학교에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립학교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학생 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 명칭) 위원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위원회를 붙여 표시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학생봉사활동 계획의 수립

2. 학교 학생봉사활동 지원 및 평가
3.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학생 교육 및 교사 연수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 인정 여부 및 범위
6. 그 밖에 학생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해당학교 봉사활동 업무 담당 교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학기별 1회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안건, 일시, 장소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 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학교 봉사활동 계획, 교육 계획에 의한 학생 봉사 프로그램 현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 교육) 학교장은 학생 봉사활동 시행 전에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학교장은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